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5차 회의 안건

▣ 회의일시 : 2018. 5. 25.(금) 14:00 ~ 15:30

▣ 장　　소 : 국립무형유산원 전승마루 세미나실

▣ 출석위원 : 서연호(위원장), 채금석, 홍나영, 진명(정혜린),
최성은, 정복상, 조일상, 신탁근, 박상미, 이정덕,
함한희, 김태식(이상 12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무 형 문 화 재 위 원 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됩니다.

   제1호.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제2호.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제4호.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아울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은 위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 해당 시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건】

1. 밀양백중놀이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 1

【검토사항 3건】

1.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 ····· 6

2.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 ····· 12

3.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낙화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 ····· 16

심 의 사 항

안건번호 무형2018-05-001

1.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가. 제안사항

'밀양백중놀이' 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박종우 전수교육조교(2007.3.12)가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7호 감내게 줄당기기 보유자로 인정(2017.4.6)됨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추진경과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2016.3.28)

법 률	시행령
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수교육조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호~8호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수교육조교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제32조(시도무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② 시·도지사는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가 아닌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시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라. 검토의견

○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박종우 전수교육조교 인정해제 여부를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심의할 사항 : 밀양백중놀이 전수교육조교 인정 해제

바. 의결사항

○ '밀양백중놀이' 전수교육조교 박종우를 인정 해제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가결 12명

검 토 사 항

안건번호 무형 2018-05-002

1. 국가무형문화재 제91호 ‘제와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안건번호 무형 2018-05-003

2. 국가무형문화재 제119호 ‘금박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

안건번호 무형 2018-05-004

3.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 ‘낙화장’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조사결과 검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